

제245회 영등포구의회
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6. 20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39호로 2023년 5월 4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·재계약 시 구의회에 하게 되는 ‘보고’를 ‘사전 보고’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위탁·재계약 시 ‘사전보고’하도록 규정 변경(안 제6조제2항)
- 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맞춤법 정비
(안 제2조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제1항,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23. 4. 28. ~ 5. 3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현행 조례 상의 표현 및 맞춤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
○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 및 안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안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안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에서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규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정비함.
- 안 제6조는 자치사무의 재위탁·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에 “보고”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“사전 보고”로 변경함으로써,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○ 검토 결과

현행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·재계약 시 소관상임 위원회에 “보고”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“보고”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며, 「영등포구 민간위탁 관리 운영지침」(2022.1.)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·재계약 시 실무적으로는 “사후보고”로 시행하고 있어,

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 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,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“민간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